



## 상주시의회 공고 제2024-32호

「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18일

상 주 시 의 회 의



### 「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예고

#### 1. 제안이유

상주시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
나.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등 지원사업(안 제5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1월 22일까지 상주시의회 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·개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일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: skysky6641@korea.kr

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
3) 팩 스: 054-535-9854 (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(전화: 054-537-7847)

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

의회 홈페이지(<https://www.sangjuCouncil.go.kr/> ⇨ 의정소식 ⇨

입법예고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성명(단체명):
- 주 소:
-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 건	비 고